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46호 2012. 9. 21 (금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2- 42 호 도로명 주소 개별고시(24차) 2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2-831호 갈사만진입도로 2호선 개설공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계획 공고 4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12-835호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
- 하동군 공고 제2012-836호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5
- 하동군 공고 제2012-837호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22
- 하동군 공고 제2012-849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4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346 호

하동군 고시 제2012 - 4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4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9. 14.

하동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944-1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3) 제 346호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 로 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944-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17	20070618	중대리 아래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250-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신기분정길 40	20070618	옛날에암행어사가분정골을지날때잠시쉬어분단장을하였다하여분정골이라는 유래가 있어 신기분정길로 명명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777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상신길 129-42	20070618	정동과 상신의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8-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51-7	20070618	화심이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493-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안심길 49	20070618	안심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644-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401-2	20070618	도로시점이악양중심으로부터서쪽에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360-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떡점길 9	20070618	매실이 많이 나는 마을특성에떡점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589-6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01-32	20080402	미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122-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87	20090302	마을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9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벽소령길 4	20090302	산 봉우리 이름으로 마을명 부여보다 인지도 있어 지형적 특성 반영 부여	

하 동 군 공 보

(4) 제 346 호

하동군 공고 제 2012 -831호

갈사만진입도로 2호선 개설공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계획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갈사만진입도로 2호선 개설공사의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사업지구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는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 09. 12.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갈사만진입도로 2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3. 사 업 량 : L=2.47km / B=11m

4. 사 업 기 간 : 2010 ~ 2014년(5년간)

5. 전체사업구간 : 하동군 금성면 공항리, 가덕리 일원

6. 보 상 계 획

○ 보 상 대 상 : 갈사만진입도로 2호선 개설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가덕리 1384번지 외 160필지

○ 면 적 : 100,716m²

(단, 등기부상 소유자와 불일치할 수 있으며, 보상면적은 측량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7. 보 상 시 기 : 토지 등 보상금 지급 및 협의요청 통보 서류 받은 후

하 동 군 공 보

(5) 제 346 호

8. 보 상 절 차 : 보상협의(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후
청구에 의해 보상금 지급

9. 보상금 집행 및 지급장소

○ 하동군 남해안개발과 남해안보상담당

10. 보 상 방 법 : 현금보상(계좌입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여 계좌입금

11. 열 략 기 간 : 2012. 09. 12 ~ 2012. 10. 05

12. 열람장소 : 하동군 남해안개발과 남해안보상담당(055-880-2644 ~ 2)
하동군 금성면사무소 (055-880-6241)

13. 이의의 제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에 의거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

○ 제출장소 : 하동군청 남해안개발과(☎055-880-2644 ~ 2)

14. 유 의 사 항

○ **행위의 제한(토지등의 보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용지도면과 토지 및 물건 상세내역은 하동군청 남해안개발과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자별 토지 및 물건 조서는 개별통지함.

※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6) 제 346 호

하동군 공고 제 2012-835호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하 동 군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2. 개정이유 : 수도공사 대행사업자로 최초 지정되면 계속 연장신청 가능하여 일부 업체만 수십년간 장기적으로 대행업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관련업체 모두에게 대행사업자 지정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연장조항을 삭제**하여 공개경쟁 방식으로 대행업 지명규칙을 운영상 필요한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11. 11. 23)

3. 주요 골자

- 가. 대행업자 지정 신청사항 일부변경(안 제3조)
- 나. 대행업자 지정기간 연장조항 삭제(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수도법시행규칙
- 나. 하동군 수도급수조례, 하동군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5. 의견 제출

- 가.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3일까지 하동군(참조 : 상하수도사업소, 전화055-880-2593), FAX 055-880-2599)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다.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공고 제 835 호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지정신청) 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7조(지정기간) ②항 및 ③항을 삭제한다

7조(지정기간) 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서를 제출 공고하여 대행업을 다시 지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8) 제 346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하동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에 의한 업으로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 2조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지정신청) ①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이력서 3. <삭제 1999.7.22.규876> 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5. 재산증명서 6. 공사용 기계 공구 명세서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3조(지정신청) ①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 <u>건설산업기본법</u> 」의 규정에 의한 <u>전문건설업 면허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u>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 기술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상수도 기술자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공업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 한다	제4조(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하 동 군 공 보

(9) 제 346 호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군관내 수도 매2,000전마다 한 개 대행업소의 비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급수지역이 분산된 경우에는 2,000전미만이라도 1개 업소를 둘 수 있다.</p> <p>② 군수가 지역실정과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거나, 급수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업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소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p>	<p>제 5조(대행업소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p> <p>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3. 지정을 취소 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4. 대행업자로서 년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제6조(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p> <p>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대행업 지정기간에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 범위내에서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지정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지정기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 (삭제)</p> <p>④ (신설)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서를 제출 공고하여 대행업을 다시 지정한다.</p>
<p>제8조(증서의 교부) ① 군수는 신규 지정 또는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제8조(증서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10) 제 346 호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보증금)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으로서 200만원을 현금 및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보증보험으로서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p> <p>②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9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공사의 하자보수 대행업 손해배상금)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사전의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 배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경우에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정한다.</p>	<p>제10조(공사의 하자보수 대행업 손해배상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사착공 요령) ① 대행업자는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검사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 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 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정 등은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p>제11조(공사착공 요령)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하 동 군 공 보

(11) 제 346 호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 받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p>	<p>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p> <p>② 군수는 전항의 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고 수도미터기에 설치 봉인하여야 한다.</p>	<p>제13조(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① 공사비는 전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p> <p>②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조의 검사필증을 급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p> <p>③ 대행업자는 전조에 의하여 개진한 수전을 여하한 명목으로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p>	<p>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p> <p>② 전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p> <p>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종업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12) 제 346 호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재, 시공 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① (현행과 같음)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기타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전 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서 수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 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대행정지)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이상 6개월이내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서 군수에게 손해를 끼친 때 2. 제17조와 제18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제19조(대행정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하 동 군 공 보

(13) 제 346 호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지정취소)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p> <p>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p> <p>3.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p> <p>4. 제7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p> <p>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p> <p>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20조(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인가 취소후의 공사계속) ①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중지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p>	<p>제21조(인가 취소후의 공사계속) ① (현행과 같음)</p>
<p>제22조(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② 전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p>	<p>제22조(보수책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시공기술자 자격시험) ①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술자의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p> <p>②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실시하고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면접과 실기시험을 병행한다.</p> <p>③ 군수는 전항의 시험일시, 장소, 요령 등을 시험 시행전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시험과목과 과목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p>	<p>제23조(시공기술자 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14) 제 346 호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응시자격) ① <삭제 1999.7.22.규 876></p> <p>1. 공업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무 또는 대행업소에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2.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기술업무 또는 대행업소에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3. 국민학교 졸업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기술업무 또는 대행업소에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②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p> <p>③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및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 수수료는 하동군수수료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24조(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p>
<p>제25조(시험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규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자가 제2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경력이 있을 때에는 제23조제2항의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p>	<p>제25조(시험면제) ① (현행과 같음)</p>
<p>제26조(합격자의 결정 공고) ① 시험과목별 득점이 40점이상 전과목 평균점수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p> <p>② 군수는 전항의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전항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기 위한 자격증을 병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제26조(합격자의 결정 공고) ① (현행과 같음)</p>
<p>제27조(자격취소) ① 군수는 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p> <p>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p> <p>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p> <p>3.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하였을 때</p>	<p>제27조(자격취소) ①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공고 제2012-836호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중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제안이유

경상남도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2. 06. 21)제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5만원)을 도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하는 경상남도 방침을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

3. 주요 골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5만원 → 3만원)
- [별표1] 의 가~마 항목의 과태료부분 5만원 → 3만원으로 조정
-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나. 입법예고 : 2012. 9. 15 ~ 10. 04.(20일)

5.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일까지 하동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전화880-6620, FAX 880-6625)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 동 군 공 보

(16) 제 346 호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2. 06. 21)제정에 따라 우리군 과태료 부과금액(5만원)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경상남도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하는 방침 (보건행정과-14081, 2012. 07. 20호)

2. 관계법령

- 가.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나.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3. 주요내용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
(50,000원→30,000원)
- [별표1] 의 가~마 항목의 과태료부분 5만원 → 3만원으로 조정

4. 금후계획

- 가. 개정안 방침 : 2012. 8월말까지
- 나. 입법예고 : 2012. 9월중(20일간)
- 다. 예산조치 : 별도 필요 없음

- 붙임 1.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신·구 조문 대비표

하동군 조례 제2012-836호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 동 군 공 보

(18) 제 346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 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 34조 제3항에 따라 5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② (생략)</p>	<p>제13조(과태료)① ----- ----- ----- 3만원의 -----</p> <p>②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19) 제 346 호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제2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근린공원 표지판(예시)



- ㄱ. 규 격 : 90cm×60cm
- ㄴ. 전용서체 : 국문(한양태백 볼트체)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 ㄷ. 전용색상
바탕(공원색 DIC 644), 글자(흰색)
금연마크(적색 DIC 198)
공원도면(연두 DIC 61)
흡연구획(노랑 Y 100)
- ㄹ.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속성목
오일스테인도장/ 샌드브레스팅공법

나. 학교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 ㄱ. 규 격 : 60cm×40cm
-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금연구역(Y5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하 동 군 공 보

(20) 제 346 호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 ㄱ. 규 격 : 35cm×9.5cm
- ㄴ. 전용서체 : 서울남산체EB
-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글자[(회색 K85, 적색(DIC2483)]
테두리(연두C40Y100), 픽토그램(초록 C40Y100), 금연구역(Y50)
- ㄹ. 재질 : PVC제질,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라. 공중이용시설 표지판(예시)



- ㄱ. 규 격 : 30cm×20cm
-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70)
금연구역(Y5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마. 아파트 표지판(예시)



- ㄱ. 규 격 : 60cm×40cm
-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하 동 군 공 보

(21) 제 346 호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획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획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하 동 군 공 보

(22) 제 346 호

하동군 공고 제2012-837호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2.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5조
-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나. 입법예고 : 2012. 09. 15 ~ 10. 04(20일)

5.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일까지 하동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전화880-6620, FAX 880-6625)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하 동 군 공 보

(23) 제 346 호

하동군 공고 제2012-837호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안)

하동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징수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하 동 군 공 보

(24) 제 346 호

하동군 공고 제849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제안 이유 : 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지방공무원인사규칙 표준안 시달에 따른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시 누락된 부분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 임.
3. 주요 골자
 - 가. 응시수수료 반환 단서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철회를 요구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
 - 나. 신규임용시험의 자격증 가산점 적용기준 변경(안 제13조의3)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적용기준 변경(3퍼센트→1퍼센트)
 -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신설)
 - 다. 특별승진임용 기준 개정(제25조)
 -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 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하 동 군 공 보

(25) 제 346 호

-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11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880-2153, FAX 880-2159, kilpo20@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 동 군 공 보

(26) 제 346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12. 9.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지방공무원인사규칙 표준안 시달에 따른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시 누락된 부분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 가. 응시자의 제출서류 정비(안 제6조 [별표 1])
- 나. 응시수수료 반환을 위한 단서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 다. 신규임용시험 시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의 가산점 적용기준을 조정함 (안 제13조의3)
- 라. 세분화된 특별승진임용기준 정비 (안 제25조)
- 마. 다면평가 근거 규정 삭제 (안 제25조의3)
- 바. 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예외규정 신설 (안 제26조의2)
- 사. 격무·기피업무 근무자의 전보기준 신설 (안 제26조의4)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인사규칙 표준안」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라. 합 의 : 기획감사실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2항 중 [별표 1] 을 별첨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2항 단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항 중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으로 하며, “만점을 3퍼센트 이내로”를 “만점을 1퍼센트 이내로”로 한다.

제2항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에 법령에”를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로 한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2호”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로 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또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 한다.

제14조 제4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를 “영 제17조제1항제4호”로 하고,

하 동 군 공 보

(28) 제 346 호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으로 하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삭제 한다.

제14조 제5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6호”를 “영 제17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4조 제5항 제3호 전문대학 졸업자 임용예정직급을 “7급·8급·연구사·
기능직기능7급·기능8급”을 “7급·8급·지도사·기능직기능7급·기능8급”으로 한다.

제14조 제7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8호”를 “영 제17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4조 제9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를
“(다수인을 대상으로-----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로 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항 중 “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을 “ [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으
로 한다.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를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제1항 2호 중 “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을 “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으로 한다.

또한, 제1항 3호 중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근무수당”을

하 동 군 공 보

(29) 제 346 호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
으로 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중 “제17조제1항제10호”를 “영 제17조제1항제
11호”로,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으로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중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을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로, 제1항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를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로 한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중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하 동 군 공 보

(30) 제 346 호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3(다면평가)을 삭제 한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제1항 중 “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를 “읍면으로 전보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용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제2항 중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인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실적이 점 부여 및 근무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를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제1항 중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장하여”를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로 하며, 제3항 중 “교수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를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로 한다.
또한, 제3항 3호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33) 제 346 호

현 행	개 정 안																
<p>⑤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출신학렬별</th> <th style="width: 70%;">임용예정직급</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졸업자</td> <td>6급·7급·연구사·기능직 기능6급·기능7급</td> </tr> <tr> <td>전문대학졸업자</td> <td>7급·8급·연구사·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td> </tr> <tr> <td>고등학교졸업자</td> <td>9급·기능직기능9급이하</td> </tr> </tbody> </table>	출신학렬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기능직 기능6급·기능7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연구사·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기능직기능9급이하	<p>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 - - - -</p> <p>-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출신학렬별</th> <th style="width: 70%;">임용예정직급</th> </tr> </thead> <tbody> <tr> <td>- - - - -</td> <td>- - - - -</td> </tr> <tr> <td>전문대학졸업자</td> <td>- - - - - <u>지도사</u> - - - - -</td> </tr> <tr> <td>- - - - -</td> <td>- - - - -</td> </tr> </tbody> </table>	출신학렬별	임용예정직급	- - - - -	- - - - -	전문대학졸업자	- - - - - <u>지도사</u> - - - - -	- - - - -	- - - - -
출신학렬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기능직 기능6급·기능7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연구사·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기능직기능9급이하																
출신학렬별	임용예정직급																
- - - - -	- - - - -																
전문대학졸업자	- - - - - <u>지도사</u> - - - - -																
- - - - -	- - - - -																
<p>⑥ (생략)</p> <p>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p> <p>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 - -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u>현재로 한다.</u></p> <p>- - - - -</p> <p>- - - - -</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 - - - -</p> <p>- - - - -</p> <p>- - - - -</p> <p>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 - - - -</p> <p>(다수인을 대상으로 - - - - -)</p> <p>- - - - -</p> <p>- - - - -</p> <p><u>현재를 기준으로 한다.</u></p> <p>- - - - -</p>																
<p>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항 중 <u>[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u> - - - - -</p>	<p>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 - - - -</p> <p>- - - - - <u>[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u> - - - - -</p>																
<p>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 - - - -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 - - 다음 각호와 같다.</p> <p>1.(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34) 제 346 호

현 행	개 정 안
<p>2. 특수환경 : - - - - - 제18호의 장려 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 - - - - - .</p> <p>3. 특수지역 : - - - - 제12조에 따른 특수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p> <p>② (생략)</p> <p>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 2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 - - - - - ,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호보자명부상의 - ----- .</p> <p>② ~ ③ (생략)</p> <p>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① 영 제38조의4 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 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 책(군의 경우 도단위 이상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기여한 공무원</p>	<p>2. 특수환경 : - - - - - 제18호의 장려 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 - - - - - .</p> <p>3. 특수지역 : - - - -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 - - - - -----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 당해 기관 - - - - - ----- ----- .</p> <p>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 - - - - - ,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호보자명부상의 -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① 영 제38조의4 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 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 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p>

하 동 군 공 보

(35) 제 346 호

현 행	개 정 안
<p>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p> <p>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p>	<p>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 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p> <p>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p> <p>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p> <p>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p>
<p>제25조의3(다면평가) ① 영 제38조의5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그 밖에 다면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제25조의3 < 삭제 ></p>
<p>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7급공무원을 6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p> <p>< 신 설 ></p>	<p>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 - - - - - - - - - - - - - - - -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하 동 군 공 보

(36) 제 346 호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의4 < 신 설 ></p>	<p>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u>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u></p>
<p>제27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생략)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u>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인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실적가점 부여 및 근무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 할 수 있다.</u></p>	<p>제27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u>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u></p>
<p>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 ----- <u>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u>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교수교원</u> 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 2. (생략) 3. <u>동일계급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u> 4. (생략)</p>	<p>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 ----- <u>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u> ② (현행과 같음) ③ ----- <u>교수요원</u> ----- 1. ~ 2. (현행과 같음) 3. < 삭 제 > 4. (현행과 같음)</p>

하 동 군 공 보

(37) 제 346 호

[별표 1] <개정 94.1.10, 99.4.16, 05.5.16, 12.9 .>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